

국외에 정당의 별도 지부 등 설치 금지

☐ 대한민국 정당은 국외에 별도의 지부 또는 당원협의회를 설치하거나
하부조직 운영을 위하여 사무소를 둘 수 없음.

☞ 대한민국의 정당은 「정당법」 제3조에 따라 수도권 서울에 중앙당을, 특별시·광역시·도에 각각 시·도당을 둘 수 있고, 같은 법 제37조에 따라 국회의원 지역구 및 자치구·시·군·읍·면·동에 한하여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음.

☞ 따라서, 정당은 국외에 별도 지부 또는 당원협의회를 설치할 수 없으며, 하부 조직을 운영하기 위하여 사무소를 둘 수 없음.

☞ 다만, 국외에 있는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당원모임체를 구성하거나 특정 정당의 정책을 지지·후원하는 재외동포들이 공직선거와 무관하게 단체를 설립하는 것은 「공직선거법」 및 「정당법」상 무방함.

▶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은 대한민국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음(정당법 제22조)

[자발적 당원모임의 명칭 관련 질의회답]

☐ 국외 당원들의 자발적 모임체의 명칭을 '당원협의회'로 하여서는 아니 될 것임.

(2010. 1. 15.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)

☞ 재외선거에 대한 자료는 [재외선거 홈페이지\(http://oknec.go.kr\)](http://oknec.go.kr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!